

# 한성과학고등학교

## 2023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

### I. 모집 인원

구분	모집 대상	인원	비고
정원 내 (7학급, 140명)	일반	112명	
	사회통합대상자	28명	모집 정원의 20%
정원 외 (8명 이내)	보훈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4명 이내	모집 정원의 3% 이내
	특수교육대상자	2명 이내	모집 정원의 2% 이내
	고입특례대상자	2명 이내	모집 정원의 2% 이내

- ※ 고입특례대상자의 경우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원자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 지원자 중 추후 서울특별시교육청 고입특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정원 외 고입특례대상자로 지원 변경 가능함

### II. 지원 자격

구분	지원 자격
공 통	<p>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과학·수학 분야에 높은 열정과 성장가능성, 창의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p> <p>가.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 나.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학교 졸업자(서울특별시 및 타시도 중학교 졸업자 포함)</li> <li>2)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li> <li>3) 타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 및 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 졸업예정자</li> </ol>
정원 내	<p>사회통합대상자 범위는 [자료 1]을 참조</p> <p>※ 사회다양성대상자는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이하의 가정 자녀에 한함</p>
정원 외	<p>보훈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p> <p>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p>
	<p>특수교육대상자</p> <p>「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준하여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p>
	<p>고입특례대상자</p> <p>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에서 인정한 특례입학대상자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p>

- ※ 지원 시 유의사항

  - (1) 학교당 추천 인원의 제한은 없으나, 과학·수학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을 추천하여야 함
  - (2) 조기졸업예정자와 상급학교 조기입학대상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조기진급 등에 관한 지침(2019.9.)」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학교장으로부터 조기졸업 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함
  - (3) 공통 지원 자격 '나. 2)항'에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해당 검정고시에서 과학, 수학 교과과의 성적이 각각 9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고 학교장 추천이 필요 없음
  - (4)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Ⅲ. 전형 방법 : 자기주도학습전형

#### 1. 전형 절차

구분	1단계	2단계
전형 내용	서류 평가 및 출석 면담	소집 면접
전형 결과	소집 면접 대상자 선정 (모집인원의 1.5배수 내외)	최종 합격자 선정

#### 가. 1단계 : 서류 평가 및 출석 면담

- 1) 서류 평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근거로 지원자를 평가

####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작성 시 배제사항 및 유의점】

- ① 올림피아드(KMO 등), 교내·외 각종 대회 등의 입상 실적
- ② 영재학급·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 ③ 학생의 교과 성적, 수학 등 교과와 관련된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④ 부모와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자기소개서 : ①,②,③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전형 단계의 최하등급 처리  
 ④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최저 등급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등급을 한 단계 이상 강등처리  
 (최저 등급자의 등급이 최하등급인 경우 최하등급으로 처리)

\*교사추천서 : ①~④의 내용 및 기타 사교육이 유발될 수 있거나 입학전형에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추천교사가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불응하는 경우 당해 학생은 전형 대상에서 배제)

\*기타 내용은 과학고 입학전형 매뉴얼(2022.3.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준함

- 2) 출석 면담: 입학담당관이 지원자와의 면담을 통해 제출 서류의 진정성 검증·확인, 추가 정보 확보  
 지원자는 면담 일시에 본교로 출석함(면담 일시는 접수 사이트에서 개별 확인)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 혹은 추천서를 작성한 교사와 유선으로 제출 서류의 내용 확인
- 3) 소집 면접 대상자 선정: 제출 서류와 출석 면담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능력, 과학·수학 분야의 재능과 탐구능력, 잠재력, 인성을 통합적으로 평가하여 모집 정원의 1.5배수 내외로 선정

#### 나. 2단계 : 소집 면접

- 1) 소집 면접: 중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고 수학·과학의 기본 개념에 기반한 창의성, 인성,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열린 문항 형태의 면접 실시(지원자 본교 소집)  
 ※ 2022학년도 소집면접 공통문항 본교 홈페이지에 탑재(2022.4.29.(금))
- 2) 최종 합격자 선정: 1단계(서류 평가 및 출석 면담) 결과와 소집 면접 결과를 통합적으로 평가

#### 2. 내신 성적 반영 과목 및 학기

구분	반영 과목	반영 학기
1단계	과학, 수학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2단계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 특정 학기의 성적이 없는 경우, 같은 학년의 다른 학기 성적을 적용하고, 같은 학년의 다른 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학기 중에서 최근의 성적을 적용함

#### 3. 사회통합대상자 선발 방법

- 가. 일반 지원자와 구분하여 순위[자료 1 참조]에 따라 단계별 선발

- 1단계 : 기회균등대상자 중 사회통합대상자 정원의 60%(16명) 우선선발
- 2단계 : 1단계 탈락자와 사회다양성 1순위 대상자 중 사회통합대상자 정원의 40%(12명) 선발
- 3단계 : 2단계 미충원 시 사회다양성 2순위 대상자 선발

- 나. 단계별 전형으로 전형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됨
- 다. 사회다양성 대상자 중 다자녀가족 자녀는 사회통합대상자 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선발
- 라. 사회통합대상자 선발 결과 미달인 경우 추가 모집하지 않고 결원으로 처리함

## IV. 전형 일정

### 1. 전형 일정

내용	일시	비고
인터넷 접수	2022. 8. 23.(화) ~ 8. 31.(수) 17:00	접수 사이트 추후 공지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2022. 8. 29.(월) ~ 8. 31.(수) [고입특례: 2022. 10. 24.(월) ~ 10. 25.(화)]	방문(09:00~17:00) 또는 우편 <b>(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b> ※ 고입특례대상자: 방문 접수만 가능
출석 면담	2022. 9. 5.(월) ~ 11. 4.(금) [고입특례: 2022. 10. 27.(목) ~ 10. 28.(금)]	본교 지정 장소
소집 면접 대상자 발표	2022. 11. 11.(금)	인터넷 접수 사이트 ※ 고입특례대상자: 본교 홈페이지
소집면접 대상자 생활기록부 제출	2022. 11. 21.(월) ~ 11. 23.(수)	<b>3학년 2학기 성적이 포함된 학교생활기록부II 출력본 1부 우편제출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b>
소집 면접	2022. 11. 26.(토)	본교 지정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	2022. 12. 2.(금)	인터넷 접수 사이트 ※ 고입특례대상자: 본교 홈페이지

※ 인터넷 접수 후 원서 접수 기간 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함

(1) 방문접수: 한성과학고등학교 원서 접수처(09:00~17:00)

(2) 우편접수: (0373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79-79 한성과학고등학교 원서 접수처  
(서류접수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함)

※ 제출서류 미비에 따른 확인절차 등으로 인해 방문 접수를 권장함

※ 일정은 교육청 및 학교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2.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일정

내용	일시	비고
합격자 소집 및 입학 등록	2022. 12. 5.(월)	입학 등록원 제출

※ 일정은 교육청 및 학교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합격자 소집일(2022. 12. 5.(월)) 입학 등록원 미제출 시 등록 포기로 간주함

※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비합격자를 선정하고 합격자 미등록 시 추가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함  
(추가합격자 개별 통지 예정일: 2022. 12. 6.(화))

## V.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제출방법	
		인터넷 입력	방문 (우편) 제출
공 통	<b>응시원서(본교 소정 양식) 1부</b> - 인터넷 접수 사이트 입력 후 출력 - 출력본에 담임교사·교감 서명, 지원자·보호자 서명, 학교장 직인	○	○
	<b>자기소개서(본교 소정 양식) 1부</b> - 인터넷 접수 사이트에 지원자가 직접 입력	○	
	<b>교사추천서(본교 소정 양식) 1부</b> - 해당 중학교에 재직 중인 수학 또는 과학 교사 - 인터넷 접수 사이트에 추천 교사가 직접 입력 - 배제사항이 포함된 경우 다시 작성해야 함	○	
	<b>학교생활기록부Ⅱ 출력본(단면인쇄) 3부</b> - 「수상제외(고입용), 교과학습 발달상황 내 원점수/표준편차 제외(고입용), 영재기록사항제외(고입용), 3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제외(고입용)」 <b>4개 옵션</b> 체크하여 출력 - 학교장 직인으로 원본대조필(첫 장) 및 간인(각 장)		○
	<b>동의서(본교 소정 양식) 1부</b> - 의예·치의예·한의예·약학과(계열) 진학 제한/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인터넷 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후 지원자와 보호자 서명		○
해 당 자 만  제 출	<b>사회통합대상자 증빙 서류 각 1부</b> - 관련 내용은 [자료 1] 참조		○
	<b>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b> (국가보훈지청장 발급) <b>학교장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본교 소정 양식) 각 1부</b> - 본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후 학교장 직인/지원자와 보호자 서명		○
	<b>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통지서 사본 1부</b> (원본대조필,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발급) <b>학교장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본교 소정 양식) 각 1부</b> - 본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후 학교장 직인/지원자와 보호자 서명		○
	<b>조기졸업예정자 증명서(본교 소정 양식) 1부</b>		○
	<b>상급학교 조기입학대상자 증명서(본교 소정 양식) 1부</b>		○
	<b>주민등록등본 1부</b>		○
	<b>주민등록등본 1부</b>		○
	<b>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b> <b>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b> <b>주민등록등본 1부</b> <b>현재 고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다는 사실 관계 증명서 1부</b> (예) 제적증명서, 정원외관리증명서 등		○
	<b>주민등록등본 1부</b> <b>현재 고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다는 사실 관계 증명서 1부</b> (예) 제적증명서, 미진학사실확인서 등		○
	<b>3학년 2학기 성적이 포함된 학교생활기록부Ⅱ 출력본(단면인쇄) 1부</b> - 「수상제외(고입용), 교과학습 발달상황 내 원점수/표준편차 제외(고입용), 영재기록사항 제외(고입용), 3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제외(고입용), 3학년 교과학습발달상황 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제외(고입용)」 <b>5개 옵션</b> 체크하여 출력 - 학교장 직인으로 원본대조필(첫 장) 및 간인(각 장) - <b>생활기록부 마감 기준일: 2022. 11. 18.(금)</b> - <b>2022. 11. 21.(월)~11. 23.(수)에 우편 제출(제출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b>		

※ 고입특례대상자 제출 서류는 10월경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 제출 서류 변경 시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함

## VI. 기타 사항

### 1. 전형료

구분	1단계	2단계	비고
전형료	20,000원	20,000원	인터넷 접수 수수료 별도
납부 방법	인터넷 접수 시 결제	소집 면접 대상자 발표 시 안내	

※ 사회통합대상자, 보훈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는 전형료를 면제함

※ 고입특례대상자는 방문 접수 시 납부

### 2. 유의사항

가. 본교는 이공계열의 과학·수학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과학고등학교이므로 **의예·치의예·한의예·약학과(계열)로의 진학은 적합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과(계열)에 지원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음

1) **의예·치의예·한의예·약학과(계열)로의 진학지도(추천서 작성 등)를 하지 않음**

2) **졸업 시 각종 수상 및 장학금 수여 대상에서 제외함**

3) **재학 중 받은 장학금 등 지원액을 회수함**

본교 입학 을 위한 지원서 작성 과정에서 위의 사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나.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학전형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라. 본교 지원자는 서울특별시 관내 전기고등학교는 물론 전국 소재 전기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음

마. 본교 합격자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시행 2023학년도 전기고등학교 추가모집에 응시하거나 후기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음

※ 본교 불합격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시행 2023학년도 전기고등학교 추가모집이나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음

바. 기타 본 전형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관련지침 및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자료 1] 사회통합대상자의 순위, 범위 및 제출 서류

구분	순위	범위	제출 서류(각 1부)
<p style="text-align: center;"><b>※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등본</li> <li>'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li> <li>※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족</li> </ul> </li> <li>학교장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본교 소정 양식)</li> </ul>
기회균등	60% 우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수급자 증명서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근거하여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 법정차상위대상자 확인증명서(해당 서류) - 생활급여대상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장애수당대상자/장애연금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 제외)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자녀	•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의 자녀	• 교육비지원 확인서
<p style="text-align: center;"><b>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요)</b></p> <p>-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p> <p>-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또는 60% 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갑작스런 사유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li> <li>○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li> <li>○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li> <li>○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li> <li>학교장 추천서(본교 소정 양식)</li> <li>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회의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중학교 학교장 직인으로 원본대조필</li> </ul> </li> <li>아동복지시설 재원증명서(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li> <li>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중학교 교감 날인으로 원본대조필</li> <li>-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천위원회 의견서 제출</li> </ul> </li> </ul> <p>(예)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 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병원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출신고확인서 등</p> <p>*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 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p>
사회다양성	<p style="text-align: center;"><b>※ 사회다양성대상자 공통서류</b></p> <p style="text-align: center;"><b>&lt;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이하 증빙&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li> <li>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세대구성원 포함)</li> <li>&lt;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 또는 '혼합인 경우 추가 서류&gt;</li> <li>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반드시 세목별 출력)</li> <li>-반드시 전국단위, 동주민센터 방문 발급, 2022년 7월분</li> </ul>
	1순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 부 또는 모가 귀화한 경우 귀화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가 외국 국적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 이탈 주민등록 확인서 (자치단체장 또는 통일부장관 발급)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족의 자녀	• 사실 관계 확인서(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장애인복지법」 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순직군경·순직소방공무원·순직교원·순직공무원의 자녀	• 순직군경, 순직소방공무원, 순직공무원, 순직교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2순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제5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다자녀가족(3자녀 이상)의 자녀	• 추가서류 없음
환경미화원 자녀(시 또는 구에 소속된 경우)		• 재직증명서	
군인(15년이상 재직중인 중령 이하) 자녀		• 15년 이상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경찰(해양경찰)(15년이상 재직중인 경감 이하) 자녀			
소방공무원(15년이상 재직중인 소방경 이하) 자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2년 8월 1일 기준 최근 6개월분(2022년2월~2022년7월)※2022년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금액은 합산에서 제외  
 ※ 건강보험증: 2022년 8월 1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2022년 5월 1일 이후 발급)  
 ※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2022년 7월분, 반드시 '전국'으로 발급(온라인 발급 불가, 토지·상가 미포함)  
 ※ 기타 증빙서류는 소속 중학교 심의일 이전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건강보험증 사본 제외)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사회통합대상자 심의 불가

**[자료 2] 사회다양성대상자 지원 자격(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적용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2022.8.1.기준 최근 6개월 평균액) 기준을 적용
  - ※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2022년 4월 연말정산금액 제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최근 6개월(2022년 2월~2022년 7월)분÷6개월
- '직장가입자' 및 '혼합(지역+직장)':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과세금액 기준 추가 적용
  - ※ 혼합(직장+지역가입자): 부 또는 모 중 1명은 직장가입자이며, 1명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부모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충족(※ 재산세 과세내역 확인 불필요)
- 건강보험료, 재산세 납부금액 확인 시, **부·모(이혼한 경우 친부 및 친모) 모두 확인·합산**

**【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기준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주택) 기준표(해당 금액 이하) 】**

단위(원)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최근 6개월 평균액)			재산세(주택) 과세금액(연간)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2022년 7월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지역+직장)		
2인	182,739	190,860	185,461	621,840	310,920
3인	235,821	258,283	240,332	980,880	490,440
4인	287,535	320,986	296,681	1,336,560	668,280
5인	350,228	386,763	370,489	1,683,360	841,680
6인	398,320	435,141	434,898	2,022,240	1,011,120
7인	473,200	511,899	511,709	2,357,760	1,178,880
8인	511,709	549,554	567,870	2,693,280	1,346,640
9인	567,870	602,760	663,895	3,028,560	1,514,280
10인	663,895	684,512	850,979	3,364,080	1,682,040

출처: 「2023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사회통합전형 추진계획」(2022.5.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

※ 재산세 과세금액은 부모의 전국에 소유한 모든 주택(아파트) 재산세를 합한 금액이며,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제외 (총재산세(주택 기준)=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 사회통합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 및 성공적 학업 수행을 위한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인 브릿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 예정